

제 7장 금융업

제 1절 근대이전

제 1항 화폐(銅錢) 유통보급기, 1600년대 초 - 1690년대말

17세기 초부터 銅錢을 法貨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화폐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 동기는 대동법의 시행에 있다. 대동법은 상품과 교환경제발달을 전제로 해서 실시된 것이고, 大同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租稅體系가 단순, 합리화되는 동시에 조선사회의 상품 생산 내지 교환경제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당시에 米, 布 등 물품 화폐와 稱量貨幣는 통화가치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는 한편, 名目貨幣로서 銅錢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은 절실해 졌다 (원유한, 1990, “조선후기의 화폐경제 발달과 그 영향,” 조기준 외,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 입문], 민족문화사: 188).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화폐제조 및 보급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응급한 국가재정을 조달하고, 간접적으로는 사회생산력과 상품 교환경제를 증진시키려 시도하였다. 1600년대 초 - 1650년대에는 중앙 및 지방관청에서, 또는 민간인이 동전을 주조하게 하였다. 주조와 별도로, 임시 방편으로 조선전기에 주조, 보관되어 있는 동전이나, 중국동전의 통용을 시도하기도 했다(원유한, 1990: 195).

그러나 1650년대 이후에는 주조관리체계를 정부로 일원화해서, 민간인에 의한 동전의 私鑄는 금지되었다. 동시에 물품화폐와 칭량화폐의 통용을 억제하고 명목화폐에 해당하는 정부의 화폐 통용을 활성화하였다.

1670년대 말부터, 동전(상평통보)이 계속 유통 보급되어, 그 1690년대 말에는 동전이 국가의 유일한 법화로서 유통기반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銅錢鑄造를 戶曹에서 관리 감독하게 하였다. 貨權在上的 이념이 도입되었고, 화폐유통량을 조절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화폐제조 원재료인 동은 日本에서 계속 수입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화폐유통의 활성화는 상품교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 부작용으로 고리대업이 성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즉 1670년대 말 동전이 법화로 유통 보급되기 이전에는 대체로 영세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대업이 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쌀로 고리대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연간 이자가 本色의 1/3내지 1/2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전이 공사면에 유통계에 널리 보급되면서, 富商大賈들이 동전을 활용한 고리

대업이 활성화되게 된다. 즉 쌀값이 높을 때, 쌀을 팔아서 동전을 대출하고, 쌀값이 낮을 때, 利子와 本色을 동전으로 환수하여 쌀을 매입하면, 그 이자가 명목은 연간 50%이라 하나 실제로는 700-800%, 심할 때에는 1,000%에 달하는 이자를 취했다. 이와 같은 고리대업은 부상대고 등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량의 동전을 비축한 관청에서도 이루어졌다(김재호, 박기주, 2004, “농촌이자율의 장기변동, 1742-1953: 영암지방 契 이자율을 중심으로”, 이영훈 편,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 후기]: 111).

제 2항 화폐유통에 대한 反動기, 1700년대 초 - 1730년대 초

화폐의 유통보급이 활성화되자, 고리대업의 성행과 농촌사회의 분화, 소비 사치 성향과 투기, 사행심 조장이 나타났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유통지역은 점차 확대되었다. 銅錢의 유통지역은 전국 각 지방으로 점차 확대되어 1720-30년대에는 이미 북으로 會寧, 서쪽으로 義州, 남으로 동래와 제주도까지 銅錢이 통용되었다(원유한, 1990: 189). 1720년대에는 田稅와 軍布를 모두 동전으로 대납케 했다고 할 만큼, 중요한 국가 수입이 화폐화되고, 하루 아침에 동전의 통용을 금지하면 政府의 需用과 군부가 지탱할 수 없다고 하였을 정도로 정부의 수용과 군부의 축적이 동전에 의존했다(원유한, 1990: 191). 조선정부는 화폐부작용을 우려하여, 일시적으로 동전유통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1720년대에 동전유통을 금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그러나 1731년 다시 동전을 주조하게 된다. 동전의 주조를 재개한 이유는 錢荒이 심하여 사회가 동요하였기에 그렇다. 이때에도 국내 동광개발이 부진하여 거의 전적으로 일본동의 수입에 의존하였다.

제 3항 화폐경제 확대 발전기, 1730년대 - 1860년대

조선 후기 사회는 화폐경제의 면에서 크게 3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米布 등 물품화폐와 청량화폐가 지배하던 봉건 조선사회에 명목적인 화폐인 銅錢이 유통보급됨에 따라서, 각 가정의 아침저녁꺼리와 사람마다 먹고 입는 물건을 모두 동전으로 매입했다고 했으리만큼, 동전은 일반 대중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통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둘째, 富商大賈 등 재부축적이 가능했던 계층에서는 다량의 동전을 축적하여, 토지를 매점하거나 생산자본 및 고리대자본으로 활용하여 자본을 증식시켰다.(원유한, 1990: 190-191). 우리나라의 농촌 이자율은 유럽은 물론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토지 수익율은 19세기에 대략 20%정도 였다. 저평가된 토지가격에 의해서 높아진

토지 수익율이 이자율의 수준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재호, 박기주, 2004: 135).

셋째, 조선후기에는 이미, 신용경제가 발달하여 상업의 발달한 지방에서는 客主, 旅閣이 설치되어 상품위탁판매업과 함께 금융업도 영위되었고, 원거리 상업거래에는 어음과 換錢標 등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조선후기의 화폐 유통의 발달과정은 1730년대이후 약 백년간의 화폐경제의 꾸준한 발달과 동시에 1850년대 이후의 당백전 화폐 발행시기까지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1850년이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조선정부는 동전의 품질과 체제를 엄격히 규제하고, 동전의 주조발행량을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불법제조를 엄격히 다스렸다. 호조가 주조사업을 관장하고, 주조량을 조절하였다. 그러나, 1800년대 초부터, 호조에서만 동전을 주조하던 것을 중앙관청, 지방관청, 군영에서도 주조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동전 주조를 富商大賈 등 민간에게도 도급을 주었다. 이 시기에는 기록에만도, 5백만 냥의 다량의 동전이 집중적으로 주조 발행되었다. “이 시기에 동전의 주조발행량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도, 320만 냥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통계에서 錢荒, 즉 통화부족현상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곧 화폐경제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원유한, 1990: 201). 그리고 鐵錢, 稱量銀貨 및 각종의 고액전을 주조하여, 동전과 併用하는 화폐제도의 개혁을 모색하였다. 1800년대에 들어서서는 甲山銅鑛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일본동의 수입량도 늘어났다. 동전 1문을 2錢 5分을 원칙으로 하는 동전 1文의 무게를 1錢 2分으로 줄였다. 무게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용되었다는 것은 실용가치에서 명목가치 중심의 화폐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목가치 중심의 화폐 보급은, 1740년대에 연 50%를 유지하였던 이자율은 1700년대 말부터 30% 이하로 하락하게 만들었고, 1810년대의 저점에 이르러서는 연 20%이하로까지 하락하였다. 물론 당시의 이자 하락은 부분적으로 계원들의 악화된 경제사정을 반영하여 이자율을 하향조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는 전라도 영암 지방의 게이자율 변화를 추적한 조사에 드러났다 (김재호, 박기주, 2004,).

당시 국가 재정의 화폐화 추세는 가속되었음을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국가 수입지출의 화폐화 추세: (1) 戶曹의 연간 수입, 1700년 84,260냥, 1790년에는 최고 409,997냥, 戶曹의 연간 지출, 1685년 33,935냥, 1776년 576,769냥

(2) 선혜청 (대동법의 시행을 관장): 수입 1763년, 230,791냥, 1785년 419,614냥, 지출

1766년 273,891냥, 1787년 448,591냥

(3) 軍布를 관리하는 均役廳: 연간 수입 1807년 518,137냥, 지출 373,837냥

그러나 금리는 1800년대 초반의 20% 수준에서 1800년대 중반까지에는 대체로 35-40% 수준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 1850년대에는 田租의 전면적 金納化를 시도하게 된다. 1866년 當百錢, 1863년에는 當五錢이 주조 유통되었다. 이로써 常平通寶(當一錢, 엽전)만을 法貨로 사용하는 單一法貨 유통체제의 한계는 극복될 수 있었다. 1894년에 銀本位制를 실시하는 동시에 常平通寶류의 전근대적 화폐의 주조 발행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원유한, 1990: 193). 이후 1910년대 말까지 장기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대부이자율과 달리 차입이자율은 1890-1900년대에 50-60%로까지 상승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김재호, 박기주, 2004: 129-131).

제 4항 금융형태

조선조 시대의 금융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정부 주도의 금융, 시장위주의 금융거래, 공동체적인 금융의 실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봉건적 형태의 국가 금융은 보, 장생고, 장리, 감리 등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實는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 사찰 등에서 행한 종교사업, 왕실과 귀족 등 재산을 가진 측에서 행한 재산증식방법이었다. 당시 보성군과 같은 현에서도 이와 유사한 금융이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웃의 통영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다. 즉 1805년 통영 통제영은 掾弊錢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통제영의 재산증식수단으로서 현재의 정책금융이자, 재정의 증식을 노리는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통영지] 場市편 (규장각 도서 10876)에는 別備(통제영에서 운영하던 예비비)로부터 구폐전 1천 냥을 4전에 대출해 주고, 이자를 늘려 (통제영의 재산에) 보탬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1851년 [통제사 柳基常 遺愛碑]의 銘文에 “봉급을 덜어내어, (빈민에게) 꾸어주고, 이자없이 연부로 갚게 했다” (충무시, 1993, [비문번역집]: 102)고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지방재정을 활용한 금융이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1874년 [통제영의 中軍 金永求 事蹟 不忘碑]의 銘文에도, “교리 군졸 등의 각 청에 예비한 저축이 없으면, 돈을 주어 모양새를 갖추게 하고, 돈이 있어서 헛되이 쓰면, 거두어서 관청의 저축금을 만들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국가 금융형태인, 長生庫와 長利는 조선시대 춘궁기에 미곡을 대여, 추수가 끝난

후 50%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하는 제도금융이었고, 甲利는 상평통보의 유통으로 등장한 고리대로, 봄에 대여하였다가, 가을에 100%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금의 200%를 갚는 제도였다.

조선시대 금융의 두 번째 형태인 지방의 상품교환과정에서 발생한 상거래상의 금융이 있다. 外劃은 조선 중기 이후의 환업무를 담당하였고, 客主는 예금, 대출업무, 어음발행 및 할인, 환업무까지 다루어, 현재의 은행과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於音은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票券으로서 개항이후, 주로 客主에 의해 발행되었다.

상거래에서 활성화된 時邊은 단기자금거래와 유사,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자금이 신속하게 거래되는 금융으로서, 객주, 여객, 개성상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금융이었다. 금전의 대부분, 어음의 할인 등에서 활용되었다. 객주나 여객은 화주가 화물이 판매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화물을 담보로 화주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판매대금의 회수시에 원금과 저리의 이자를 받았다.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환전거간이 개재하여, 무담보로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조 시기의 금융의 세 번째 형태는 공동체적인 금융형태로서 계였다. 특히 농민들의 자구적인 금융으로서 契는 상호부조적 금융으로서, 상호신용금고의 모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계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계, 대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식산계, 無盡에 유사한 상호신용계, 作태契로 나눌 수 있다. 작태계는 추첨식 도박 형태로 산통계(통이나 상자에 계원의 이름을 써넣은 알을 넣은 뒤 통을 돌리다가 나오는 알로 당첨 결정)나 작백계(작태계: 일정번호를 붙인 표를 100명(작백계), 1,000명(천인계) 혹은 10,000명(만인계) 등 일정한 단위로 팔고 추첨하여 총매출액의 80%를 복채금으로 돌려줌)로 나눌 수 있다.

제 5항 화폐경제 혼란기 (1860년대 - 1890년대)

1866년에는 당백전을 주조하여 유통시켰다. 이는 명목가치 중심의 화폐가 통용되어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素材價値 즉 實用價値 중심의 화폐가치관이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名目價値 중심의 화폐가치관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소재 가치가 절반이하로 줄어든 동전이 동일한 명목가치로 사용되는 등, 화폐가치 인식의 진보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當2, 當5, 當10, 當百錢 등 高額券 유통론이 제기 논의되었고, 마침내 1860년대에는 당백전을 주조 유통하기에 이르렀다” (원유한, 1990: 190). 당시에 대원군은 함경도

감영의 동전주로를 중단시키고, 동전원료를 공급하던 갑산동광을 폐쇄하는 한편, 당백전을 16백만 냥을 남발하였다. 화폐의 남발은 화폐가치를 폭락케 하고, 물가는 폭등하여, 사농공상 등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극고의 궁핍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에 1867년 당백전 통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동전 3-4백만 냥을 수입 유통시킨다.

1876년에는 개항이후 일본을 비롯한 선진제국의 근대화폐가 유입되었다. 1877년에 조선 정부는 典園局을 설치하여, 시험적으로 신식화폐를 제조하였다. 이자율의 법정한도는 私債의 법정한도가 조선후기에 낮아져, 公私債 공히 연 20% 수준으로 수렴하였지만, 개항이후에는 공사채 모두 이자율이 상승하였다. 농촌에서의 연 50%의 장리나 대차문서에서 확인되는 월 4-5%의 이자율은 개항전부터 지속되는 것이었다. 개항전 연 10%가 원칙이었던 관청의 이자율(公債)도 개항이후 30-40%, 경우에 따라서는 50% 수준으로까지 높아져, 공사채 이자율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었다.

1883년에는 조선정부는 또 다시, 당오전을 남발하게 된다. “고리대는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후기에 더욱 심화되었다. 19세기 담보이자율은 월 5%, 무담보부 이자율을 월 3-5%가 일반적이었으며, 강화도 洪氏家の [長冊]에서 나타난 1888-1894년간의 이자율은 연 51% 수준이었다.”

1894년에는 일본의 영향아래, 은분위 화폐제도를 수용하는 신식 화폐발행장정이 공포 시행되었다. 그리고 상평통보류의 전근대적 화폐의 주조발행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당시 은분위제의 수용은 조선정부의 화폐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5냥은 분위화로 하고, 4종 5등의 화폐를 제조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실제 제조는 적었고, 그중 백동화만이 많이 유통되었다(이기수 외, 1947/1989, [현대조선사회경제사], 이성과 현실).

제 2절 근대

제 1항 화폐

1901년에는 금분위제도를 수립하고 화폐조례를 발표하였으나, 실시되지 못하고, 민간에는 여전히 엽전(상평통보)과 백동화의 2종만 유통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가지 화폐는 부작용이 심했다. 엽전은 종류가 너무 많고, 가치가 너무 적어서 다액의 상품거래에는 부

적당하였고, 백동화는 한국 정부의 濫鑄과 민간의 私鑄가 성행하여 위조가 많았다(이기수 외, 1947: 410).

1904년 일인 재정고문은 (1) 제일은행 지점을 한국의 중앙은행 지위로 올리고 (한국국고금 취급, 화폐정리사무를 위탁, 제일은행의 은행권을 무제한 통용토록 공인), (2)한성공동창고를 조직 (상품 담보금융, 회회, 어음제도의 폐지를 노력)하였다. 이어서 1905년 한일협정서를 통해서, 화폐개혁을 시도하여, 일본화폐의 통용을 공인하고, 구 은화와 백동화의 환수 조치를 취했다. “구화의 가치를 1/2로 절하시키는 한편, 舊 백동화와 엽전의 가치를 낮게 책정했다”. 이로써 한국인의 화폐적 자산은 약 67%가 수탈당해, 금융공황이 발생했다. 이후 이어진 금융기관의 개편에는 (1) 1906년에 농공은행을 설립하고 (부동산금융, 장기금융의 담당기관), (2) 1907년에는 지방금융조합규칙을 제정해 각지에 금융조합을 설립하여 농민에 대한 새로운 고리대금업을 정비하였다. 이어서 (3) 1908년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창설해 조선농민의 착취와 제국주의적 이민 정책기관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1908년 7월부터 엽전의 공정가격을 1매당 2리로 하고 1圓에 한하여 법화로서 유통하게 했다. 1909년 말 이후에는 백동화의 유통을 금지하고, 엽전은 점차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1918년에는 일본 정부의 화폐법을 조선에 시행하기로 하여, 일선 화폐통일공작은 끝을 맺었다(이기수 외, 1947: 411). 일본이 조선을 일본의 화폐체제로 통합시키는 이 시기에는 여전히 봉건적 화폐제도의 혼재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따듯 화폐량과 이자율도 조선조시기의 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자율은 180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35-40% 수준에서 안정이었다. 이후 1910년대 말까지 장기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대부이자율과 달리 차입이자율은 1890-1900년대에 50-60%로까지 상승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의 화폐 통합이후에는 전국적인 금융기관의 보급으로 1910년대 후반부터는 전국적으로 이자율이 수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후 금융시장이 전국적으로 동조화하고, 화폐공급량이 풍부해지면서, 대부이자율은 1930년대에 20%로 1940년대에 10%까지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해방후, 1947년부터 상승으로 반전하여 1945년 이후 1950년대 초에는 2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김재호, 박기주, 2004: 129-131).

제 2항 은행

초기의 은행은 일본인들의 금융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키 위해 일본계은행이 등장하였

으며, 이후 한국계의 은행은 과거의 고리대업을 하는 조직들이 은행으로 탈바꿈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토착 자본계 은행은 토지가옥 저당, 대부를 주로 하는 고리대기관으로서 전당포와 별 다르지 않은 존재였다” (이기수, 1947: 411).

[표 1] 초기의 은행 설립

연도	은행명	국적
1872년	제일은행 부산지점	일본계
1878년	부산포에 설치된 제일은행	일본계
1890년	제 18은행	일본계
1892년	제 58은행	일본계
1897년	한성은행 (무상의 정부 자금을 지원받음-> 현재의 조흥은행)	
1898년	대한천일은행(정부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음) -> 상업은행,	
1908년	조선상업은행 통영지점	
1906년	한일은행	

1906년에 일제는 통감부를 통해 [은행 조례] 공포하였다. 식민지기의 금융기관의 정비는 (1) 경제정책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중앙은행의 설립, (2) 부동산 금융기관의 설치, (3) 급격히 몰락해 가는 농민층에 대한 특수금융기관을 설치의 형태를 띠었다. 이후 1913년에는 은행령을 반포하였고, 1914년에는 은행령을 개정하고, 농공은행령을 반포하였다. 이후 1918년에는 농공은행을 합해 장기신용, 부동산신용기관으로서 식산은행을 발족시켰다.

일제시기 고성의 금융 기관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통영의 현황을 일견함으로써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인들에 의한 통영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와 농공은행 출장소 설립운동에 대한 기사가 당시의 신문에 등장한다. (1) “통영항에는 금융기관이 없어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하여, 통영에 살고 있는 시마카와 등 4명의 일본인 및 부산, 마산의 大商人이 발기하여 주식회사 통영은행 (자본금 20만원)을 설립하기로 숙의하였다더라” ([경남일보], 1910년 11월 19일자).

(2) 1910년 1월에는, 통영지방 (당시 지명 용남군)에 농공은행(1906년 은행 조례 제정후 최초로 설립된 지방은행) 출장소 설립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경남일보], 1910. 2. 6일자). “대구 농공은행에서는 지난달 22일에 총회를 개최하고, 손익을 보고한 후 용남군에 출장소 1개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이때 대구 농공은행은 진주농공은행과 합병하여 경상농공은행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08년 합병). 농공은행은 애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농공업 보다는 상업자금의 지원에 주력했다. 결국 용남농공은행은 1912년 10월 1일, 경상농공은행 통영지점이라는 상호를 달고 개점한다. 본점은 대구에 소재하고, 농공업자에 대

한 자금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보통은행(일반은행) 업무의 겸업이 허용되었다. 예금은 1913년에 260만원, 1914년에 256만원, 대부금은 1913년에 63만원, 1914년에 100만원수준이었다. 그러나 1918년에 농공은행은 해체되었고, 조선식산은행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후 1929년에는 조선식산은행의 저축업무를 인계받은 조선저축은행이 있었다. 조선저축은행 통영지점도 설립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통영에는 농공은행의 상호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경남의 은행 현황, 1923년 3월말현재

은행명	예금	대출금
조선은행 부산지점	1,372천원	5,242천원
식산은행 부산지점	4,511	20,416
제일은행 부산지점	3,232	2,433
18은행	1,192	1,350
130은행	2,570	931
부산상업은행본지점	1,737	2,653

자료: 경상남도, 1922, [道勢一斑]

이후 경남 지역에 일반은행은 1939년 말 현재, 한성, 조선상업, 동일, 호남, 경상합동, 대구상공의 6개 은행으로 감소했다. 1940년 기준으로 보면, 통영에는 3개 은행 지점(조선식산은행, 조선상업은행, 조선저축은행)이 있었다. 이들 은행의 예입은 6008만원, 대출은 2435만원이었다.

해방후, 1956년에 농업은행이 설립되었고 이후 1961년에 농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은행의 모태가 되었다. 1958년에 제일은행이 설립되었고, 조선저축은행은 1946년에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조선저축은행은 1952년과 1954년 두 차례에 걸쳐, 식산은행 점포를 승계하고, 1958년에는 제일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70년에는 경남은행이 창립되었다.

제 3항 금융조합

1907년에 지방금융조합령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협동조합과 신용조합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주 및 부농층의 이용물로 되고, 일제 상품과 농민생산물의 구매와 판매과정을 취급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일제자본의 착취 원조기관이 되었다. 1914년 지방금융조합령이 발표되었다. 애초에 금융조합의 설립목적은 농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조합원을 위해 위탁판매, 공동구입 등의 사업을 하고, 새로운 화폐의 보급 및 농사의 개량 및 발달을 위한 것이었다. 예금업무와 농공은행의 대출 중개업무도 취급했다. 1915년 1월

19일에 통영지방금융조합이 인가를 받아, 2월 15일에 업무를 개시하였다. 당시에 조합원수 249명, 조합기본금은 1만원, 조합원 출자액은 3천여 원이었다. 1918년에 지방금융조합은 금융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통영지방에는 3개의 금융조합, 통영, 두룡, 진남금융조합이 있었다. 1940년 3개 금융조합의 예입은 648만원, 대출은 233만원 수준이었다. 이들 금융조합은 해방이후에는 1962년에 수산업 협동조합이 설립, 그리고 1963년에 농촌신용조합을 설립으로 이어진다. 농촌신용조합은 이후 마을 금고로 발전한다.

[표 3] 고성의 금융조합, 1923년 3월말

조합원수 604명	예금 117천원	대부금 100천원
		매개 대부금 104천원

자료: 경상남도, 1922, [道勢一斑]

제 4항 무진회사

일본 또는 한국의 특유한 금융제도로서 상호부조의 목적 하에 조직된 서민금융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진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22년 4일 제령(制令) 제7호에 의하여 「조선무진업령」이 공포된 때부터이다. 무진이란 일정 구수와 급부금액을 정하여 정기 부금을 불입케 하며 1구마다 추첨·입찰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부금자에게 금전의 급부를 하는 상호금융이다. 그런데 무진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대 금융기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① 융자시기가 추첨·입찰 등 우발적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때 자금이용이 곤란한 점 ② 일정한 구수로 조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조직상의 불편 ③ 소자본에 의한 상호금융을 기본 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점 ④ 그 성격상 예금과 대출이라는 상반된 계약이 동일계약상에 융합·성립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금리계산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무진은 가입이 간편하고 일단 가입 후에는 추첨 및 입찰의 형식으로 확정된 용자(무진급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둘째 무진은 장기의 부불(賦佛)상환식 금융이므로 서민과 중소기업자에 적합한 금융방식이란 점, 셋째 소비대차계약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령에 의한 이자율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무진이 오랫동안 서민금융의 주요 담당자 역할을 해 온 것은 이 때문이다.

1922년부터 설립을 시작한 無盡會社는 1933년에 34개사에 달했다. 통영에는 부산 무진 주식회사 통영지점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1993, [상호신용금고 20년사] 중 ‘일제식민지 하의 서민금융제도’)이 있었고, 고성에는 1940년 말 가입자는 2,680명, 수입고는 54만원, 급부금 49만원, 대부금은 12만원 수준으로 기록되었다. 1942년에는 조선무진회사라는 한 회사로 통합되었다.

[표 4] 고성의 저축단체 현황, 1922년말

저축단체 42개	단체원수 849명
저축금액 22천원	단체당 평균 525천원 (경남 평균의 절반 수준)
	일인당 평균 26 (경남 평균의 2배 수준)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이후 한국무진·중앙무진·대구무진·한국신흥무진·고려무진 등 5개의 무진회사가 무진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여러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별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기존 무진업의 결함을 지양하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서민대중을 위하여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고조되어 오던바 1961년 12월 7일자로 공포된 국민은행법에 의거하여 무진회사 중 일부를 흡수·병합하고 명실상부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은행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1963년에는 무진회사를 승계한, 국민은행이 설립되었고, 1972년에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된다.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 서민금고 등이 사금융업체들이 대부분 상호신용금고로 인가되었다.

제 5항 객주客主

1700대 후반부터 성행한 객주제도는 수산물 유통에 활발하게 금융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수산물의 유통은 객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통영객주는 내륙지 상인과 거래하였으며, 이들은 선박편으로 마산, 부산, 여수 등지로 실려가 그곳에서 다시 철도편으로 전국각지에 수송했다. 통영객주는 동업자로 활동한 사람이 45명 정도로 추산, 이중 대구 등 선어류 취급자가 30여명, 건멸치 등 건어물 취급자가 15명 정도로 추정한다. 이들은 高利貸 금융으로 영세영업자를 사실상 지배하였다. 객주의 금전 대부는 물품의 판매위탁을 조건으로 하는 前渡金 등이 있었으며, 어업의 위험성, 불안정성 등의 특수성 때문에 예상 손실을 감안하여, 자연 고리대화하였다. 해방이후 수협이 생기면서, 수협 중매인으로 전업한다.

제 6항 전당포 (質屋)

전당포 업은 유가물을 보관하고, 자금을 대부하여, 그 이자를 취득하는 업이다. 고려 때에는 典當局 (典舖)으로 불리웠다. 1898년에 [전당포 세칙]을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전당포는 저당물없이 신용만으로도 貸金을 내주었다. 그러나 일본인은 모든 貸借에 물적 담보를 철저히 적용했다. 이 무렵 한국거류 일본인 사이에서 전당업은 어떤 업종보다 이득이 많이 남는 대단히 유망한 업종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당포의 고객은 대부분 조선인

들이었다. 전당물은 옷이나, 베, 비녀 등의 머리장식물, 반지, 가구, 금속류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가옥문서나 토지문서 혹은 그해의 토지생산물을 잡히는 경우도 있었다. 대금액은 귀금속의 경우 市價의 약 7할, 의류나 물품은 5할에 불과했다. 금리는 지방이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한 달 이자는 대금액이 5원이하일 때 7-8부에서 1할, 10원 이상 30원까지는 4-5부에서 7-8부, 100원 이상은 3-4부가 보통이었다. 1940년 현재 통영에는 6명의 질옥업자 (조선인 5명, 일본인 1명)

제 7항 우체국 금융

[표 5] 고성의 우체국 금융 현황, 1922년말

일본인 551명	예금 45,484천원	일인당 평균 83천원 (경남 평균의 2배)
한국인 1,582명	7,715	5 (경남 평균 조금 상회)

자료: 경상남도, 1922, [道勢一斑]

제 8항 신탁회사

1922년부터 신탁회사가 설립되었다. 1930년에 29개사, 1931년에 정리되어, 5개사로 감소, 1932년에는 조선신탁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모든 신탁회사를 통합했다.

제 3절 1990년대 이후

제 1항 금융기관 현황

[표 6] 고성군의 금융 현황, 1990년대

구 분	1987년	1991년			1992년	1999년
	예 금	예금 현황	회원수	직원수	예 금	종사자
농 협		198억원	13,610명	291명	245억원	
수 협		85억원	1,829명	35명	121억원	
축 협		100억원			150억원	
경남은행		113억원			141억원	
우 체 국		21억원			110억원	
새마을금고		108억원				

합 계	256억원 경남은, 농협,수협	517억원 (새마을 제외)			772억원	780명 70개 업체
-----	------------------------	----------------------	--	--	-------	----------------

자료 : 고성군, 1995, [고성군지];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경남소상공인 지원센터, 2000, [장사목을 잡아주는 길잡이, 경남주요지역 상권분석: 고성군]

주 : 보험회사 지부, 사금융 등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하고, 또 이들에 대한 자료수집이 여의치 못하여 포함하지 못했다 (고성군, 1995: 753).

[표 7] 고성의 금융 및 보험업 현황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06년	54개	605명
2007년	52개	542명 (남 282명, 여 260명)
	개인 9개	18명
	법인 43개	523명
	1-4명 종사자 15개	31명
	5-9명 14개	95명
	10-19명 13개	161명
	20-49명 10개	255명
	금융업 36개 379명 (은행 및 저축기관 34개)	376명
	보험 및 연금 7개	105명 (보험업 7개 105명)
	관련 서비스업 9개	58명(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9개 58명)

[표 8] 고성의 금융 기관 예금, 대출 현황

구 분	2005년		2010년	
	예 금	대 출	예 금	대 출
농협 2개, 경남은	1,454억원	1,787억원	1,485억원	2,120억원
새마을금고 2개	507억	347억	684억	509억
회 원	13,745명		21,923명	
신용협동조합 1개	-		227억	151억

2014년말 한국은행 경남지점 통계에 따르면, 고성군에는 경남은행 1개, 농협 2개 등 3개의 예금은행이 있으며, 비은행기관으로는 신용협동조합 1개, 상호금융인 농협 5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개, 새마을 금고 2개, 우체국이 14개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 2항 지역 분포

[표 9] 고성군내 지역별 금융점포 현황, 2007년

지역명	금융 및 보험업체수	종사자수	비 고
고성읍	30개	335명	은행 및 저축기관 13개 170명 보험업 7개 105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 8개 57명
삼산면	1개	8명	은행 및 저축기관
하일면	1개	10명	은행 및 저축기관
하이면	1개	11명	은행 및 저축기관
상리면	1개	24명	
대가면	1개	9명	
영현면	1개	9명	
영오면	2개	17명	은행 및 저축기관 1개 16명
개천면	1개	6명	
구만면	1개	10명	
회화면	4개	27명	
마암면	1개	11명	
동해면	3개	21명	
거류면	4개	44명	

[표 10] 고성군내 지역별 금융 및 보험업 현황, 2010년

지 역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고성읍	32	337
회화면	4	36
거류면	4	31
동해면	3	18
영오면	2	13
삼산면	1	9
하일면	1	9
대가면	1	7
영현면	1	7
개천면	1	5
구만면	1	8
마암면	1	10
합 계	54	561